

(기존건물용)

| 열 사용 신청서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처리기간<br>14일 |
|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※사용자<br>번호  |         | ※공급열매체  |                     | ※계약종별   |      | ※접수일 |             |
| 건물명   |         |   | 건물소재지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소유자   | 주 소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  | 성 명     |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(주민등록번호) |         | 전화번호 |      |             |
| 사용자<br>(관리인)  | 주 소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  | 성 명     |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(주민등록번호) |         | 전화번호 |      |             |
| 건축물현황   | 건축허가연면적 |   | m <sup>2</sup>      | 열부하     |      |      | Mcal/h      |
|   | 열사용용도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난방, 급탕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냉 방 |                     | 동수/기계실수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열공급개시요청일  |         |   | ※열공급개시예정일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.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1.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 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2.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3.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,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.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년 월 일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신청자 소유자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(인)  |             |
| 신청자 사용자(관리인)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(인)  |             |
| <b>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</b>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주)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1.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2.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3.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사용인감계(인감증명서 제출시)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4.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 5.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

※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.